

자원회수재활용법 개정안 총설명

자원회수재활용법(이하 본 법이라 함)은 2002년 7월 3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었고, 2009년 1월 21일에 개정 시행된 바 있었음.

현시점에서 전 세계적인 자원 위기와 기후변화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바, 국제사회는 보편적으로 “자원순환”을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경로로 인식하고 있었음.

또한 유럽연합은 2020년에 「신순환경제 행동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발표하여, 순환경제는 기존의 폐기물관리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속가능성과 순환성 요소를 포함한 지속가능제품 정책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명확히 제시했음.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지속가능발전 요구를 함께 충족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자원순환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법제 기반을 완비할 필요가 있었음.

이에 기존의 말단 폐기물 회수·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제품의 전 생애주기 동안 자원순환을 확장함으로써 “자원순환 효율 극대화, 폐기물 최종처리 최소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음.

이번 개정의 구체적 방향은 다음과 같았음:

국가 차원의 자원순환 종합계획 수립, 자원순환추진위원회 설치, 녹색설계 기준 마련, 제품 및 공사에 재생 원료 사용, 원천감축과 금지·제한 사용, 제품 수명 연장, 제품 디지털 추적, 공공부문 우선구매, 보조 및 인센티브 제도, 자원순환 전용부지 지정, 순환금융 및 투자 유도, 자원순환 실증실험(샌드박스) 제도 등임.

이에 본 법의 개정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법 명칭을 「자원순환촉진법」으로 변경하고자 했음. 그 주요 개정 요점은 아래와 같았음:

- ① 중앙 관련 기관이 자원순환을 추진해야 하며, 그 권한과 책임사항을 신설했음. (제9조)
- ② 중앙 주관기관은 국가 자원순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방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했음. 중앙에는 자문기구로 자원순환추진회를 설치했음. (제11조, 제12조)
- ③ 중앙 주관기관은 제품 및 건설공사에 대한 녹색설계 기준을 정하고, 일정 규모·유형의 제품 또는 공사에 대해 그 기준 준수 및 재생 원료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했음. (제13조~제16조)
- ④ 중앙 주관기관은 특정 품목의 포장·용기에 대해 재사용 목표 및 방식을 공고하고, 지정업체는 해당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음. (제17조)
- ⑤ 특정 품목 또는 포장재에 대해 감축 목표 및 방식을 지정하고, 관련업체가 감축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음. (제18조)
- ⑥ 중앙 주관기관 또는 주무기관이 품목 또는 포장재의 제조·수입·판매·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했음. (제19조)
- ⑦ 특정 품목의 포장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업체는 이행성과를 보고하도록 했음. (제20조)
- ⑧ 특정 품목의 사용 수명 연장 목표 및 방식을 설정하고, 업체는 그 이행성과를 보고해야 했음. (제21조)
- ⑨ 순환 표시(라벨) 신청, 승인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음. (제22조)
- ⑩ 지정된 품목 또는 포장재에 대해, 수리 및 순환이용에 유리한 제품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공개하고 표시하도록 했음. (제23조)

- ⑪ 정부기관, 공립학교, 공기업이 환경보호 제품·순환제품·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민간이 우선구매할 경우 보조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음. (제32조)
- ⑫ 자원순환 실적이 우수한 기관, 기업,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센티브, 보조, 세금 감면, 금융 및 보증 우선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음. (제33조~제35조)
- ⑬ 혁신 실험계획의 신청 및 실행성과 보고 제도를 신설하고, 자원순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실험 기간 동안 본 법 및 폐기물처리법 관련 허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음. (제37조)

자원회수재활용법 개정안 조문대조표

수정 후 조문	현행 조문	설명
<p>자원순환촉진법</p>	<p>자원회수재활용법</p>	<p>①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규범에 부응하고,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반영하기 위해, 본 차 개정에서는 녹색경제, 원천감축, 지속가능소비, 순환 스타트업 보조 등 추진 방향을 확대했음</p> <p>② 기존 법령에서 말단 폐기물 회수·재활용 중심에서 벗어나 제품 전 생애주기 전반의 자원순환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법 명칭을 「자원회수재활용법」에서 「자원순환촉진법」으로 개정했음.</p>
<p>제1장 총칙</p>	<p>제1장 총칙</p>	<p>장 명칭은 동일했음.</p>
<p>제1조</p> <p>본 법은 자원순환을 추진하고, 자연자원의 사용을 절약하며,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환경 부담을 완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했음.</p>	<p>제1조</p> <p>본 법은 자연자원의 사용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며, 자원의 회수·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 부담을 완화하여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실현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했음.</p>	<p>① 자원순환 실현과 지속가능발전형 순환사회 구축이라는 목적을 반영하여 입법 목적을 수정했음.</p> <p>② 본 법이 타 법에 우선함을 명시한 조항은 삭제했음.</p>
<p>제2조</p> <p>본 법에서 말하는 “주관기관”이란 중앙은 환경부, 직할시는 직할시 정부, 현(시)은 현(시) 정부를 말함.</p>	<p>제3조</p> <p>본 법에서 말하는 “주관기관”이란 중앙은 행정원 환경보호서, 직할시는</p>	<p>① 조문 번호를 변경했음.</p> <p>②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환경보호서를 환경부로 개정했음.</p>

	직할시 정부, 현(시)은 현(시) 정부를 말함.	
<p>제3조</p> <p>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생자원: 본래의 효용을 상실했지만 경제성과 기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서, 본 법에 따라 공고되거나 승인받아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 가능한 자원 2. 순환이용: 재생자원을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하는 행위 3. 재사용: 재생자원을 원형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 효용을 회복시켜 다시 사용하는 행위 4. 재생이용: 재생자원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다른 물질과 결합하여 재료, 연료, 비료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5. 사업자: 제조, 판매, 운송, 서비스, 건설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회사, 단체, 기관, 법인이 아닌 단체 및 중앙 주관기관이 지정한 자 포함 6. 재생제품: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자원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 	<p>제4조</p> <p>동일 항목이나 '회수·재활용' 중심 용어 사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문 번호를 변경했음. ② 용어 체계를 정비하고, '회수·재활용'을 '순환이용'으로 전환했음. ③ 개념 정의 항목을 보다 명확히 기술했음.
<p>제4조</p> <p>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물질을 사용할 때는 우선적으로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방식을 고려해야 하며, 그 효용이 상실된 경우 순차적으로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 회수 및 적정 처리를 고려해야 했음. 단, 생애주기 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상 이익이 최대인 경우에는 예외로 했음.</p>	<p>제6조</p> <p>동일 취지 내용 존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원순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우선순위 원칙을 명문화했음. ② 본 조항의 이행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해 적용하도록 했음.
<p>제5조</p> <p>사업자는 사업 활동 수행 시 다음 원칙을 따라 자원 소비를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며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해야 했음: 1. 청정 생산기술 채택 2. 원자재 사용의 감축 조치 시행 3. 자원이 효용을 상실한 경우 자가 순환</p>	<p>제9조 '회수·재활용' 중심 문장 구조였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순환이용' 개념을 중심으로 재구성했음. ② 제조업자의 제품 수명 주기 설계 책임을 강화했음.

<p>이용 또는 적정 처리 실시</p> <p>4. 제조업자는 제품 수명 연장, 수리 서비스 제공, 순환이 쉬운 설계, 재료의 종류 표시 등을 이행해야 했음</p>		
<p>제6조</p> <p>국민은 자원 소비를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며, 제품 수명을 가능한 한 연장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해야 했음.</p>	<p>제10조</p> <p>국민은 자원 소비를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며 자원의 회수·재활용을 촉진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함.</p>	<p>① 조문 번호를 조정했음.</p> <p>② 소비자 책임을 ‘순환이용’ 개념에 맞춰 확장했음.</p>
<p>제2장 정부기관 권한 (장 신설)</p>	<p>(해당 없음)</p>	<p>① 범부처 자원순환 정책 통합·협력 필요에 따라 신설했음.</p> <p>② 각 정부기관의 자원순환 업무 권한을 명시함.</p>
<p>제9조 중앙 관련 기관은 자원순환을 추진해야 하며, 관련 권한은 다음과 같음:</p> <p>1. 에너지·제조·산업: 경제부 주관, 관련 중앙기관 협조</p> <p>2. 과학단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과기회) 주관</p> <p>3. 운송: 교통부 주관</p> <p>4. 농업: 농업부 주관</p> <p>5. 건축: 내무부 주관</p> <p>6. 토목: 관련 주무기관 주관</p> <p>7. 환경: 환경부 주관</p> <p>8. 녹색금융: 금융감독위원회 및 환경부 공동 주관</p> <p>9. 기술 R&D: 과기회 및 환경부 공동 주관</p> <p>10. 보건의료: 위생복지부 주관</p>	<p>(해당 없음)</p>	<p>① 「기후변화대응법」 제8조를 참조하여 부문별 주관 부처를 명시했음.</p> <p>② 녹색금융 관련 사항은 「녹색 및 전환금융 행동계획」에 근거함.</p>
<p>제10조</p> <p>각 주무기관은 사업자의 원천감축 및 자원순환 계획 지도, 정책 인센티브 제공, 기술 개발 인력 양성, 교육 홍보를 실시해야 했음.</p>	<p>(해당 없음)</p>	<p>① 제9조의 기관별 권한에 따른 구체적 이행 조항을 마련했음.</p> <p>② 인센티브·홍보·기술 양성 포함.</p>
<p>제11조</p> <p>중앙 주무기관은 자원순환 목표, 환경 상황, 국제 동향, 제9조 권한 분장 등을 고려</p>	<p>(해당 없음)</p>	<p>①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자원순환 계획 수립 및 이행체계를 제도화했음.</p>

<p>해 국가 자원순환 종합계획(이하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원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이를 공개해야 했음. 계획은 5년마다 검토했음. 각 중앙 주무기관은 계획에 따라 자원순환을 추진해야 했고, 중앙 주관기관은 연 1회 이행 성과를 종합해 보고서를 작성·공개해야 했음. 지방정부는 계획에 근거해 실행계획(이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의 승인 후 시행·공개해야 하며, 5년마다 검토했음. 지방정부도 연 1회 이행성과 보고서를 작성·공개해야 했음.</p>		<p>② 연차별 성과 공개를 통해 국민 참여 유도 및 투명성 확보를 도모했음.</p>
<p>제12조 중앙 주관기관은 제11조의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자원순환추진위원회(이하 “추진회”)를 설치할 수 있었음. 추진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차관 중 1인을 지정함. 위원은 정부기관, 전문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전문가 및 환경단체 구성 비율은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어야 했음.</p>	<p>제5조 중앙 주관기관은 재생자원 회수·재활용 촉진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위원장, 구성, 이익충돌 회피 조항 포함.</p>	<p>① 기존 위원회 조항을 전면 개편해 자문기구로 성격을 정립했음. ② 이익충돌 조항은 삭제하고, 전문가 중심 구성 규정을 신설했음.</p>
<p>제3장 순환 지속관리 (기존 ‘원천관리’에서 명칭 변경)</p>	<p>제2장 원천관리</p>	<p>① 장 명칭을 기존 ‘원천관리’에서 자원순환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지속관리’로 개편했음.</p>
<p>제1절 녹색설계 (절 신설)</p>	<p>(해당 없음)</p>	<p>① 자원순환 선진국(예: EU)의 ‘설계 단계 개입’ 원칙 반영. ② 제품·건설 설계 기준 제도화.</p>
<p>제13조 중앙 주관기관은 제품 및 건설공사에 대해 녹색설계 기준을 정할 수 있었으며, 그 항목은 다음과 같았음: 1. 단일 재료 사용, 해체 용이성, 순환 가능성 2.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 원료 사용 3. 수리 용이성, 업그레이드 가능성, 내구성 향상 4. 유해물질 금지 또는 제한 5. 건설 시 폐기물 감축을 위한 현장 분리배출 6. 에너지 절감 및 폐기물 감축이 가능한 기타 설계 요소</p>	<p>제12조 산업별 제품 설계 기준 공고 및 재생자원 사용 권고 가능</p>	<p>① 제품 및 건설물의 순환성을 설계 단계에서 확보하기 위한 항목들을 명시했음. ② 기존 고시형 권고를 법률상 기준으로 격상했음.</p>
<p>제14조 제품이 제13조 제1항에 따른 녹색설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업</p>	<p>(해당 없음)</p>	<p>① 녹색설계 기준을 자율적으로 이행한 제품에 대해 인증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음.</p>

<p>자는 중앙 주관기관에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었고, 승인사항에 따라 이행해야 했음. 신청 자격, 제출서류, 심사, 승인, 변경, 폐지, 관리 등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랐음.</p>		<p>② 세부 운영사항은 시행규칙이나 고시로 위임함.</p>
<p>제15조 중앙 주관기관이 공고한 특정 종류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제품은 지정된 녹색설계 항목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했으며,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정된 기한 내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사항에 따라 이행해야 했음. 재생 원료 사용이 요구되는 경우, 원료 출처, 사용량, 생산량 및 판매량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며, 자료제출 방식과 기한 등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랐음.</p>	<p>(해당 없음)</p>	<p>① 특정 제품군에 대해 녹색설계를 강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했음. ② WTO 통보 요건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함.</p>
<p>제16조 중앙 주관기관이 공고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지정된 녹색설계 항목을 따라야 했음. 각 부문별 주무기관은 기술 기준 및 작업 지침에 본 조 기준을 반영하여 검토하고 개정해야 했음.</p>	<p>(해당 없음)</p>	<p>① 건설 분야에서도 순환성 확보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녹색설계를 강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② 공공 발주 공사 등을 염두에 둔 규정임.</p>
<p>제2절 원천감축 (절 신설)</p>	<p>(해당 없음)</p>	<p>①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줄이는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반영했음.</p>
<p>제17조 중앙 주관기관은 지정된 품목의 포장재 또는 용기에 대해 재사용 목표 및 방식 등을 공고할 수 있었고, 해당 제조자, 수입자 또는 판매자는 재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음. 계획에는 대상, 방식, 회수 설비, 재사용 수량 목표 등이 포함되었고,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했음. 지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자발적 신청이 가능했음.</p>	<p>(해당 없음)</p>	<p>① 재사용 가능한 포장·용기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음. ② 자발적 참여도 가능하도록 개방적 구조로 설계했음.</p>
<p>제18조 중앙 주관기관은 특정 품목 또는 업종에 대해 포장재나 용기의 감축 목표 및 방식 등을 공고할 수 있었고, 해당 사업자는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고 이행해야 했음.</p>	<p>(해당 없음)</p>	<p>①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규범적 접근을 제도화했음. ② 목표와 방식에 따라 감축을 점진적으로 유도함.</p>
<p>제19조</p>	<p>제13조 공공</p>	<p>① 제한·금지 조항을 확대하고</p>

<p>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포장재 또는 제품은 중앙 주관기관 또는 주무기관이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었음: 1. 과도한 자원 또는 에너지 소비 2. 장기 분해되지 않는 성분 포함 3. 유해물질 포함 4. 회수 곤란하거나 회수 체계에 방해될 우려 5.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 또는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생산·판매량, 사용 재료 등을 보고해야 했으며, 위반 시 회수, 폐기, 수출 등의 명령이 가능했음.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중앙 승인 후 강화된 제한 기준을 공고할 수 있었음.</p>	<p>장소에서 지정된 일회용품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었음.</p>	<p>적용 대상을 명확히 했음. ② 환경위해 요건을 근거로 한 행정 명령 가능성을 확보했음. ③ 지자체가 강화된 제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p>
<p>제3절 지속가능 소비 (절 신설)</p>	<p>(해당 없음)</p>	<p>① 소비자 측면의 자원순환 참여 유도 제도를 마련했음. ② 표시·정보 공개 중심의 제도를 설계했음.</p>
<p>제20조 중앙 주관기관은 제품, 포장재, 용기 등에 대해 포장 공간비율, 총수, 사용 재질, 수량 등을 포함한 감축 목표를 공고할 수 있었음. 해당 사업자는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했음.</p>	<p>제14조 포장비율, 재질 등 제한 가능 조항 존재</p>	<p>① 포장과 관련된 과잉 자원소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했음. ② 보고의무를 부과해 관리체계를 확립했음.</p>
<p>제21조 중앙 주관기관은 제품의 수명 연장 목표 및 방식을 공고할 수 있었고,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했음: 1. 사용 후 회수 서비스 제공 2. 반복 충전이 가능한 구조 설계 3. 임대, 보증금 환불, 재구매 등 유통서비스 제공 4. 수리 서비스 제공 및 수리거점 설치 5. 일정 기간의 보증제도 제공 6. 기타 중앙 주관기관이 인정한 방식</p>	<p>(해당 없음)</p>	<p>① 제품 수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방식을 제도화했음. ② 생산자책임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됨.</p>
<p>제22조 순환 제품·서비스를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는 중앙 주관기관에 순환 표시(라벨) 사용을 신청할 수 있었음. 승인을 받은 경우, 제품, 포장재, 제공 장소에 라벨을 표시할 수 있었고, 디지털 방식의 표시도 가능했음. 무단 사용 또는 허위 표시는 금지되었음.</p>	<p>(해당 없음)</p>	<p>① 순환 경제 제품·서비스에 대해 공신력 있는 인증 제도를 도입했음 ②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표시 제도를 마련했음.</p>

<p>제23조 중앙 주관기관은 지정된 제품 및 포장재·용기에 대해 다음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시 및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음: 1. 재질, 재생 원료 비율 2. 포장재 재질과 중량 3. 수리 가능성, 내구성, 수리 방법 4. 회수, 분해, 재활용 방식 5. 분리배출 표시 6. 기타 지정된 사항 자발적 공개도 가능했음.</p>	<p>제11조 일부 제품에 대한 재질, 재생비율, 분리배출 표시 의무</p>	<p>① 제품 관련 환경정보의 디지털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했음 ② 향후 EU의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에 대비한 제도 설계임.</p>
<p>제24조 환경표지(에코라벨)의 사용을 원하는 자는 중앙 주관기관에 신청할 수 있었으며, 규격 기준을 충족해 승인을 받으면 제품, 포장재, 서비스 제공 장소에 표시할 수 있었음. 사용 실적 및 생산·판매량을 보고해야 했고, 필요 시 제품 표본 검사도 가능했음.</p>	<p>(해당 없음)</p>	<p>① 기존 에코라벨 제도를 법률에 명시해 근거를 강화했음 ② 표지 사용의 관리감독 체계를 도입했음.</p>
<p>제25조 승인 없이 환경표지를 무단 사용하거나 위조하는 경우, 다음 행위가 금지되었음: 1. 제품, 포장재, 문서 등에 무단 사용 2. 표지, 인증서, 인증번호 등을 이용한 허위 홍보 3. 인증서 또는 마크 위조 4. 기타 부적절한 사용으로 중앙 주관기관이 금지한 행위</p>	<p>(해당 없음)</p>	<p>① 환경표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정사용 방지 조항을 신설했음 ② 위반 시 과태료 및 공개처분 등의 근거가 됨.</p>
<p>제4장 재생자원 운영관리 (기존 장명: 운영관리)</p>	<p>제3장 운영관리</p>	<p>① 장 명칭을 ‘회수·재활용’ 중심에서 ‘재생자원 순환 전반’을 포괄하도록 변경했음.</p>
<p>제26조 재사용이 가능한 재생자원 항목은 중앙 주관기관이 공고했음. 공고된 자원은 운반, 보관, 설비기준, 사용기록 등 관리사항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해야 했음.</p>	<p>제15조 일부 항목 지정 가능 조항 존재</p>	<p>① 대상 자원 지정 방식을 명확히 함 ② 재사용 관리를 위한 실무 기준 근거를 마련했음.</p>
<p>제27조 재생자원 또는 재생제품은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표준이 없는 경우 중앙 주무기관과 협의해 별도 기준을 공고할 수 있었음.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본 법 제5장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되었음.</p>	<p>제16조 국가표준 제정·협의 근거 존재</p>	<p>① 제품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해 표준 부합을 요건으로 명시했음 ② 기준 미달 시 인센티브 배제 근거를 신설했음.</p>
<p>제28조 국내 재생자원의 순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 주관기관은 필요 시 수입 또는</p>	<p>제17조 중앙 주무기관과 협의</p>	<p>① ‘순환 이용’ 촉진 목적을 명확히 했음 ② 자원 역외 유출 및 환경 부</p>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었음. 구체적 적용은 별도 규정에 따랐음.	후 제한 가능	담 대응 수단으로 활용 가능함.
제29조 중앙 주관기관이 지정한 사업자는 재생자원의 생산, 저장, 운송, 재사용, 재생이용, 수출입 등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했음. 서면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었음.	제18조 지정 사업자에 대한 보고 의무 존재	① 보고 대상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음 ② 디지털 자료 제출을 허용해 실무 효율성을 높였음.
제30조 재생자원을 정해진 방식에 따라 순환 이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원은 폐기물로 간주되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회수·처리해야 했음.	제19조 동일 내용	① 간주 규정 명확화로 책임 회피를 방지했음.
제31조 자원회수 대상 폐기물이면서 동시에 본 법의 재생자원으로 지정된 자원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회수·보관·처리 비용을 회계 처리해야 했음.	제20조 동일 내용	① 회계상 처리 규범을 명시해 이중 규제 해소함.
제5장 보조 및 인센티브 제도 (기존 장명: 보조 및 인센티브 제도)	제4장 보조 및 인센티브 제도	① 조문 체계 재정비에 따라 장 번호만 변경되었음.
제32조 정부기관, 공립학교, 공기업, 군부대는 다음 품목 또는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했음: 1. 환경보호 제품 2. 제22조에 따른 순환 제품·서비스 3. 기타 환경 관련 인증 제품 또는 지속가능한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품목과 이행사항은 규정으로 정하며, 중앙 주관기관은 이행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방법을 공고해야 했음. 민간기업 또는 단체가 해당 품목을 우선 구매한 경우, 중앙 기관 및 주무기관은 보조금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었음.	제22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규정 민간은 인센티브 조항 없음	① 우선구매 품목에 '순환 서비스' 및 지속가능 항목을 포함함 ② 민간 구매자에게도 보조 근거를 부여함.
제33조 제품 또는 포장재의 재사용 또는 수명연장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 중 실적이 우수한 경우, 중앙 주관기관은 보조금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었음. 단, 해당 사업자가 본 법 제19조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된 자원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았음.	(해당 없음)	① 순환서비스 산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조항을 신설했음 ② 행정처분 받은 위반자 배제 규정 포함.
제34조	제23조	① 지원 대상을 기술개발 외

<p>자원순환 기술 개발, 교육, 지속가능 소비 촉진,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을 이행한 기관, 단체, 개인 또는 기업에게 보조금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었음. 또한 본 법과 관련된 투자 행위에 대해 「산업혁신 조례」 또는 기타 관련 법에 따라 세금 감면, 대출이자 보조 등도 적용 가능했음.</p>	<p>기술개발 우수자 보조 및 세제 혜택 근거 있음</p>	<p>교육·소비·인력 등으로 확대했음 ② 타 법 연계를 통한 지원수단을 명시했음.</p>
<p>제35조 중앙 주관기관은 자원순환 산업에 투자한 기업이 대출, 융자 또는 신용보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었음.</p>	<p>(해당 없음)</p>	<p>① 자원순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접근성 지원 조항을 신설했음.</p>
<p>제36조 중앙 주관기관은 자원순환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순환 재료 공급 등을 위한 전용 부지를 지정할 수 있었음.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시계획법」 및 「국토계획법」에 따라 변경 가능했음.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무상 제공 또는 임대가 가능했음. 용도 외 사용 시 토지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있었음. 산업단지 개발 시 자원순환 관련 부지 확보를 요구할 수 있었음.</p>	<p>제24조 자원순환 사업 전용지 지정 및 무상사용 조항 존재</p>	<p>① 기존 규정을 확장하여 도시계획 연계 근거를 명확히 했음 ② 산업단지 내 의무 확보 조항 추가.</p>
<p>제37조 사업자는 자원순환 혁신실험계획을 작성해 중앙 주관기관에 신청할 수 있었고, 실험 종료 후 이행 성과자료를 제출해야 했음. 승인된 실험은 실험 기간 동안 중앙 주관기관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 법률의 일부 또는 전부 적용이 면제될 수 있었음: 1. 본 법 제26조~제30조 2.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14조, 제18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6조, 제39조 제2항, 제41조 제1항 3. 자원순환 기술 관련 기타 환경법. 단, 민형사 책임 조항은 제외되었음. 계획의 자격, 절차, 심사, 승인, 변경, 폐지, 성과보고 및 관리 기준은 별도로 정했음.</p>	<p>(해당 없음)</p>	<p>① 순환기술 실증 및 제도 유연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조항을 신설했음. ② 적용 제외 법률을 명시해 법적 예외 범위를 명확히 했음.</p>
<p>제6장 벌칙 (기존 제5장)</p>	<p>제5장 벌칙</p>	<p>① 장 번호만 조정됨.</p>
<p>제38조 본 법에 따라 신청 또는 보고의무가 있는 자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 신청,</p>	<p>제25조 벌금 상한 1500만 원</p>	<p>① 허위 신고 및 문서조작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했음.</p>

허위 보고 또는 문서에 허위 기재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었음.		
제39조 제15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즉 녹색설계 승인 미신청, 승인사항 불이행, 건설공사 기준 미준수 등의 경우 6000원 이상 3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시정명령 및 공사중지 처분이 가능했음.	(해당 없음)	① 녹색설계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조치를 명문화했음.
제40조 제19조 위반 시 다음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했음: · 제조·수입업자: 6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판매·사용업자: 1200원 이상 6만 원 이하	(해당 없음)	① 책임주체에 따라 차등 부과함.
제41조 다음 항목 위반 시 3만 원 이상 15만 원 이하 과태료 및 시정명령이 가능했으며, 중대한 사안의 경우 1개월 이상 1년 이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했음: 1. 제8조 행정조사 회피, 방해, 거부 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위반	제26조 일부 유사 내용	① 위반 항목과 처분 수위를 구체화했음.
제42조 다음 위반 시 1만 원 이상 15만 원 이하 과태료 및 위반 사실 공개 가능했음: 1. 제22조: 순환라벨 무단 사용 2. 제23조: 제품정보 미공개 3. 제24조: 환경표지 관리 위반 4. 제25조: 환경표지 위조·허위 사용 등	(해당 없음)	① 표시·정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음.
제43조 다음 항목을 위반한 경우, 6000원 이상 15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1. 제17조: 포장재사용계획 미제출 2. 제18조: 감축계획 미제출 3. 제20~21조: 포장 감축 및 수명연장 미이행	(해당 없음)	① 계획 미제출 및 실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신설
제44조 제43조 위반 사항 중 판매업자 또는 공급자에 대해서는 1200원 이상 6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해당 없음)	① 중소판매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과태료를 차등 설정했음.
제45조 제41조의 ‘중대한 사안’은 다음에 해당했음:	제27조 유사 정의 존재	① ‘중대 위반’ 기준을 명문화했음.

1. 동일 조항을 1년 내 2회 위반한 경우 2. 순환 미이행으로 환경오염 유발한 경우 3. 허위문서 제출 4. 그 외 중앙기관이 인정한 중대한 위반		
제46조 벌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정부 또는 주무기관이 집행했음.	제29조 동일	① 집행 주체를 명시해 지방사무화 했음.
제47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했음.	(해당 없음)	① 처분 기준 명확화 목적
제7장 부칙 (기존 제6장)	제6장 부칙	① 조문 번호만 조정되었음.
제48조 각종 신청에 대해 심사비, 증명서 발급비 등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었으며, 금액은 중앙기관이 정했음.	(해당 없음)	① 신청 수수료 근거를 마련했음.
제49조 시행세칙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했음.	제30조 동일	① 번호 변경 외 동일
제50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며, 제15조는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했음.	제31조 공포 후 1년 후 시행	① 제품 녹색설계 의무의 준비 기간을 2년으로 설정했음.